

# 신체감정신청서

사 건 2009가단10000호 손해배상(의)

원 고 임 껍 정 외 1

피 고 흥 길 동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.

## 다 음

### 1. 입증취지

원고의 의료과실에 의한 피고 임껍정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입증하고자 합니다.

### 2. 신체감정할 곳

- 귀원이 지정하는 대학병원 재활의학과
- 귀원이 지정하는 대학병원 성형외과(위 재활의학과와 동일한 대학병원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### 3. 신체 감정 사항

별지와 같음.



공증인가 법무법인 韓 半 島

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  
TEL : (02) 591-8787 FAX : (02) 594-6003

#### 4. 첨부서류

- 가. 박00 의원 의료기록 사본 1부
- 나. \*\*병원 의료기록 사본 1부
- 다. 김◇◇ 정형외과 의료기록 사본 1부
- 라. \*\*병원 영상기록 CD 1장



2009. 01.

위 피고들 소송대리인

法務法人 韓半島

담당변호사 이 범 성  
이 용 환  
박 정 근  
김 형 균  
김 원 탁

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00단독 귀중



공증인가 법무법인 韓半島

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  
TEL : (02) 591-8787 FAX : (02) 594-6003

# 신체감정신청서

사 건 2009가단10000호 손해배상(의)

원 고 홍길동 외 1

피 고 임격정



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00단독 귀중



공증인가 법무법인 韓半島

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  
TEL : (02) 591-8787 FAX : (02) 594-6003